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46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및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수령자 중복 지급 제외 제도 개선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11.

다.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및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수령자
중복지급 제외 제도 개선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대상자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직전 연도’ 수령자를 ‘해당 연도’ 수령자로 변경하고(안 제8조제3항제3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직전 연도’ 수령자에서 ‘해당 연도’ 수령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 ② (생략)	제8조(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 ----- ----- -----. ----- ----- ----- -----.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3. ----- ----- ----- -----해당-----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 ----- ----- ----- ----- ----- -----. ----- ----- ----- -----해당----- ----- -----

현행	개정안
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¹⁾을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자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²⁾을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자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농업을 겸업하는 임업인 등은 당해 연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경우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또는 농업 면적직접지불금)의 반납·정산이 가능하도록 요구(민원 제기)하고 있으나,³⁾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서는 법령준수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를 이유로 착오지급, 부정수급 적발 등의 사유 외에는 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⁴⁾

이에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또는 농업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인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현행법 제8조제3항제3호의 목적은 중복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간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자를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

3) 산림청에 따르면, 직전 연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이나, 임업인의 고령화 등에 따른 제도 이해 부족으로 중복 신청하여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22) 455건 → ('23) 482건 → ('24) 413건].

4)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업직접지불제 시행('22년) 초기임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예외적으로 반납을 허용한 바 있으나, 법령준수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2024년 사업지침에 직접지불금 반납 사유(착오지급, 부정수급 적발 등)를 구체화함.

어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중복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상 미비점
이 있으므로, ‘직전 연도’를 ‘해당 연도’로 변경할 경우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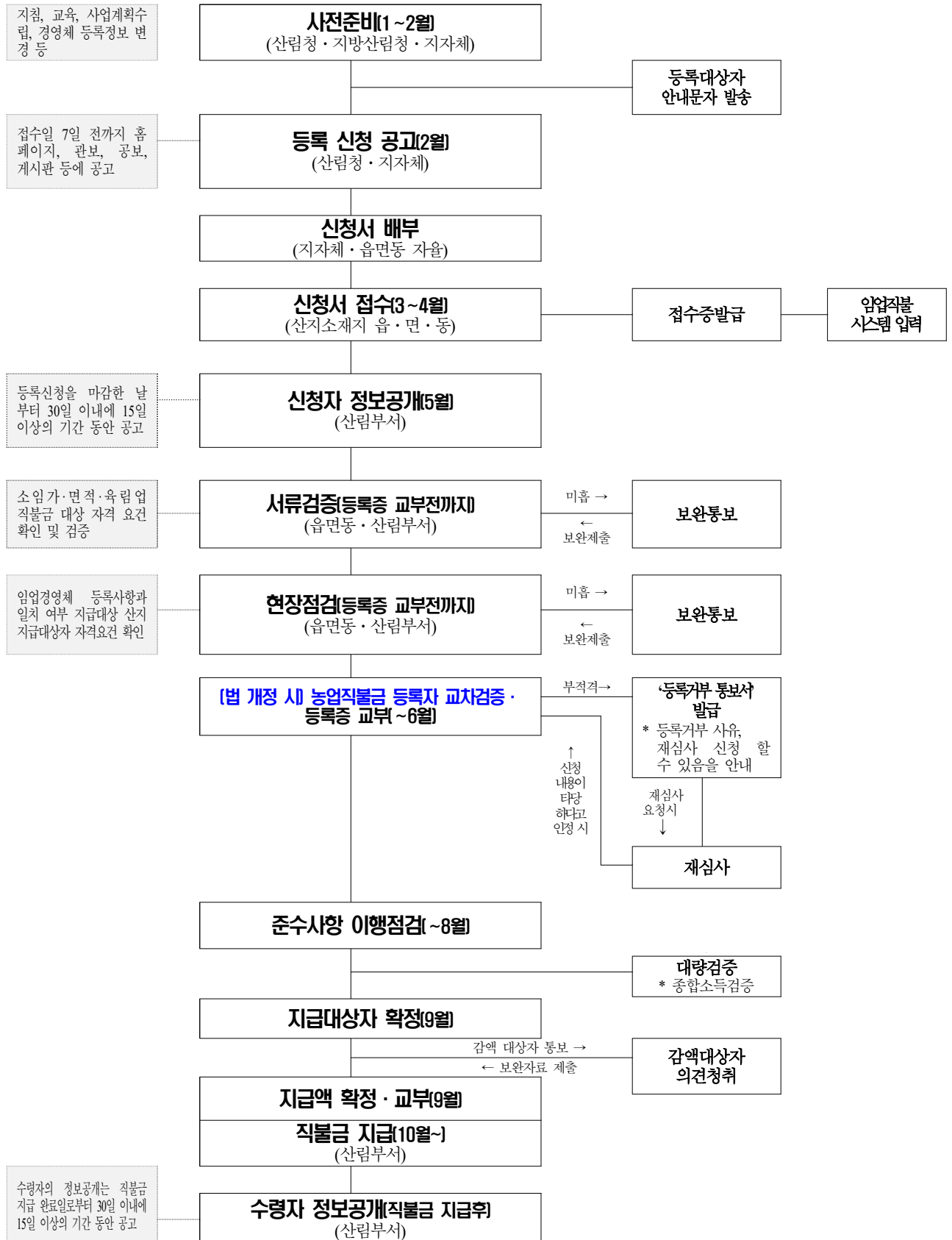
참고 1

임업·농업 직접지불제도 비교

구분		임업직불제	농업직불제
목적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임업인 소득안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 소득안정
근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1.11.30, 시행 '22.10.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9.12.31, 시행 '20.5.1)
종류	기본형	임산물생산업 ^① 소규모임가, ^② 면적), ^③ 육림업	^① 소규모농가, ^② 면적
	선택형	-	^① 친환경, ^② 친환경축산, ^③ 경관보전, ^④ 전략작물, ^⑤ 탄소중립
대상지		'19.4.1~'22.9.30.임업경영체(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등록 산지	1) '98~'00 논농업 이용 농지 2) '12~'14 밭농업 이용 농지 3) '03~'05 농업 이용 농지
대상자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하고 자격요건 충족 임업인, 농업법인	대상 농지에서 농업 종사하고 자격요건 충족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요건 (공통)		① (경영체) 등록必 ② (거주) 농촌(산지 소재 시·군, 연접 포함) * 이외 주업요건 ③ (종사기간) 1년 이상 ④ (종사일) 60일 이상 ⑤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⑥ (소득) 농업 외 37백만원 미만 * 모두 충족	① (경영체) 등록必 ② (거주) 농촌 * 이외 주업요건 ③ (종사기간) 3년 중 1년 이상 ④ (종사일) - ⑤ (판매액) 120만원 이상 * 또는 면적(0.1ha 이상) 인정 가능 ⑥ (소득) 농업 외 37백만원 미만
지급단가		① 소임가 : 130만원/가구 ② 면 적 : 94~70만원/ha ③ 육림업 : 62~32만원	① 소농가 : 130만원/가구 ② 면 적 : 215~136만원/ha
지급면적		① 소임가 : 0.1~0.5ha ② 면 적 : 0.1~30ha(* 임가 상한 60ha) ③ 육림업 : 3~30ha(* 임가 상한 60ha)	① 소농가 : 0.1~0.5ha ② 면 적 : 0.1~30ha(* 기존 수급자 초과면적)
예산('25)		517억원	29,536억원
수령자('24)		20천건	1,284천건
의무준수 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등의 적정 사용 등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등의 적정 사용 등

참고 2

임업 직접지불제도 신청 · 지급 추진절차



참고 3

농업 직접지불제도 신청·지급 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전년도 12~ 신청연도 1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② 직불금 신청·등록	(비대면) 2.1~28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한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4~4.30.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③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인피지원등급),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④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 현장점검(5~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⑤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직불금 지급 완료 후 15일 이상)
⑦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